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사망자에게만 발급하는 생명나눔증서를 타인에게 순수기증하는 생존
기증자에게까지 확대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증자 예우를 확대하는 등
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보건복지부령 제 호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26호 생명나눔증서의 “고인”을 “위 사람”으로 하고, “사랑을 일깨워주셨습니다. 고인과 가족 여러분께”를 “주셨기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○월 ○○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[별지 제26호] 생명나눔증서 증서번호 제 호 생 명 나눔 증 서 성명: 생년월일: <u>고인은</u> 생명나눔을 몸소 실천하시고 숭고한 사랑을 일깨워 주셨습니다. <u>고인과 가족 여러분께</u>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4호에 따라 이 증서를 드립니다. 발급일자: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비고 1. 보건복지부장관의 날인은 관인(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한다)으로 한다. 2. 전자이미지 관인 사용 시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하여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해야 한다. 210mm × 297mm[백상지(150g/㎡)]	[별지 제26호] 생명나눔증서 증서번호 제 호 생 명 나눔 증 서 성명: 생년월일: <u>위 사람은</u> 생명나눔을 몸소 실천하시고 숭고한 사랑을 일깨워 주셨기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4호에 따라 이 증서를 드립니다. 발급일자: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비고 1. 보건복지부장관의 날인은 관인(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한다)으로 한다. 2. 전자이미지 관인 사용 시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하여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해야 한다. 210mm × 297mm[백상지(150g/㎡)]